

---

#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및 안전진단 역량 강화 방안 마련 연구」 제안요청서

---



국 토 교 통 부  
시 설 안 전 과

## 〈 목 차 〉

I. 연구용역 개요 .....	1
II. 참가자격 및 계약의 방법 .....	3
III. 주요 과업 내용 .....	4
IV. 과업수행 지침 .....	6
V. 과업수행 보고 및 성과품 제출 .....	10
VI. 보안 대책 .....	12
VII.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16
VIII.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18
IX. 평가방법 및 기준 .....	19
<제안관련 서식 일람> .....	22

## 1. 과업명: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및 안전진단 역량강화 방안 마련 연구

### 2. 과업 배경

- 「시설물안전법」에 의거,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 안전진단 관리 실시 중이나,
    - 저가계약 만연 등 안전진단 품질 저하 및 일부 다중이용 시설 안전사고 우려 증가
  - 적절한 대가를 확보하지 못한 저가(기준 대비 70% 이하) 계약이 상당수 (87%)를 차지, 부실진단 우려 있어 원인 파악 및 개선방안 검토 필요
  - 관리주체 및 진단업체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실태점검을 위해 감독관 제도 도입 및 보수·보강 조치 이행강화 검토 필요
  - 지역 내 출렁다리 등 다양한 시설이 증가하고 있고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방안 검토 필요
- ☞ 시설물 안전관리 내실화를 위해 ①저가계약 해소, ②시설안전감독관 제도 마련, ③취약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 등을 추진

### 3. 과업의 목적

-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 안전 강화를 위한 「시설물안전법」 및 관련 하위 규정 제도 개선, 필요시 신규 예산사업 추진 등 활용
- 취약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인력 및 재정확보를 위한 근거자료 활용

### 4. 과업의 범위

- 안전진단 저가 계약 해소 및 전문기관 등록 요건 완화로 안전진단 품질 제고 방안 마련
- 가칭 시설 안전 감독관 도입 등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마련
- 출렁다리 등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

### 5. 예 산 액: 금 칠천만원정(₩70,000,000원, VAT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6. 과업 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로 함

-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연장 가능

### 7. 계약방법 :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 II

## 참가자격 및 계약 방법

### 1. 참가자격(아래 조건을 동시 충족할 것, 비영리기관의 경우 1)~3) 충족하면 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자
-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단,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요)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요)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2. 계약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에 의해 결정
-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 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반영하여 평가하며, 종합평가(기술평가점수+입찰가격 평가점수)결과 고득점을 얻은 업체 순으로 가격협상을 통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

\* 기술능력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일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 Ⅲ

## 주요 과업 내용

### 1) 안전진단 저가 계약 해소 및 전문기관 등록 요건 완화로 안전진단 품질 제고 방안 마련

#### ○ 부실 진단 가능성이 큰 저가 발주·계약 해소방안 마련

- 현행 안전점검 발주·계약 체계 문제점 및 저가발주 유형 및 주요 원인 도출 및 분석
  - \* FMS자료, 통계청, 재해연보, 미디어 리서치, 관리주체 및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한 현행 안전 점검 품질 저하 요인 도출
- 인센티브, 사후 평가제도, 벌칙 등의 타 분야 유사사례 수집 및 분석
- 저가발주 방지 및 안전진단 품질 제고를 위한 벌칙, 우수업체 인센티브 및 평가제도 강화방안 마련
  - \* 건설사업 및 유지관리사업 관련 사후평가 지침, 평가 방법, 평가체계 등을 수집하여 벤치마킹 (공공사업 사후평가, SOC 사업 운영 평가 시스템 등)
- 저가계약 및 부실점검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주체·용역업체·참여기술자 등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책임공유 방안 등 제도개선 방안 제시
- 저가발주 원인이 되는 주요 시설물의 현실적 내·외업 과업량 조정 방안 및 이를 고려한 대가기준 마련

#### ○ 안전점검·진단 전문기관 등록 요건 재검토

- 현행 안전점검·진단 시장 분석을 통한 점검·진단업 기준, 점검·진단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및 기술교육 의무화, 실적관리 등 검토
-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등록요건(기술 인력 수, 자격 요건) 조정방안 및 실적관리 개선방안 제시
- 시설물유지관리업자 유효기간 만료('23.12)로 인한 안전점검 업종 신설 관련 등록요건 및 개정 법령안 제시

## 2) <sup>가칭</sup> 시설안전감독관 도입 등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마련

- 시설물 관리 주체 및 안전진단 전문기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감독관제도 도입 방안 검토
  - 국내 유사사례 기준,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 조사 및 분석
  - 국내·외 철도시설·항공안전 감독관 등 관련 제도 절차 및 방법 검토
  - 현행 법령·제도 검토를 통한 시설안전감독관 제도 도입 방안 제시
  - 시설물 보수·보강 조치 이행강화 등 기타 안전관리 체계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

## 3) 출렁다리 등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

- 출렁다리 안전관리 제도화 방안 마련
  - 현행 출렁다리 3종 시설물 지정 현황조사 및 개선 필요성 검토
  - 출렁다리 3종 시설물 지정, 절차, 방법, 기준 등에 대한 개선안 제시
- 출렁다리 안전 점검지침 개선 등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
  - 현행 출렁다리 안전 점검지침 조사 및 점검항목 적절성 평가
  - 출렁다리 안전 점검체계 및 점검항목 개선안 제시
- 다중 이용시설물 중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관리 대상 외 안전 취약시설 현황조사 및 관리방향성 제안

## 1. 일반사항

- 과업 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세부 과업별 인력투입 계획, 추진 일정계획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의거 전체 과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일정계획은 과업 수행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참여시켜야 하며, 동 전문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시 세부 추진 일정 및 국내외 현지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예정 공정표에 따라 수행한 진도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세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본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2. 세부 과업 지침

### 가. 용어의 해석

- 과업 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자와 과업 수행자 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협의하여 결정한다.

### 나. 과업 내용 및 용역비용의 변경

- 과업 수행과정에서 과업 내용 및 용역비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과업 수행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과업 수행자가 발주자에 제출한 세부 과업 수행 계획서상의 과업



담당자를 본 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자의 계획 변경이 있을 시는 변경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계획 변경으로 과업이 중지되거나 과업 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 기간은 과업 수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다. 과업수행기준

- 이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본 과업의 과업지시서 중 참가자격에 명기된 인력이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인력이 본 과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 발주자는 과업수행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연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과업 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연구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참여 인력의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거나, 발주자의 요구로 교체될 때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라. 경미한 사항의 과업 수행

- 과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 지시서상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 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마. 과업 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 과업 수행자는 성과품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과업 결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 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는 과업 수행자는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바.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계획공정에 비해 현저히 공정이 미달 되거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과업 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보고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사. 과업 수행자의 직급별 적용기준

- 본 과업 수행자의 직급별 적용기준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77호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3조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되,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과업 수행자의 변경 시에도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구 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기업, 단체 등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이상 ○석사학위취득 후 해당분야 8년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4년이상 ○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7년이상 ○석사학위취득 후 해당분야 5년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기타 동등 이상 경력소유자	○전문대학이상의 과정이수자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연구수행을 단순 보조하는 보조원
대 학	○부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	○석·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고등학교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 순보조원
출연 연구 기관	○책임연구·기술원 ○선임연구원 5년이상	○선임연구·기술원 5년이하 ○연구원	○기능직	○고등학교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 순보조원

## 자. 특허권의 사용

- 본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인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과업 수행자는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비용부담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 차. 성과품의 소유

-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용역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과 이를 원 제작물로 하는 2차 저작물 및 위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등을 포함하는 저작권, 판권, 특허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한은 우리부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모든 성과품은 우리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 및 배포할 수 없으며, 과업내용 및 결과를 세미나, 학술지 등에 발표·기고하고자 할 경우 우리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자. 기타사항

- 과업 수행자는 과업 내용을 수행하기 위하여 받은 사업비에 대하여 사업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과업 수행자는 사업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비 처리하여야 한다.
- 용역계약 후 과업 지시서상에 수록된 내용 이외에 발주자의 각 시행 부서나 관련 지자체의 행정기관이 보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한다.
- 과업 중 과업 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판단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사전협의하여 방침을 받도록 한다.

## 1. 과업 수행보고

- 계약자는 과업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착수계획(사업수행계획서 포함)을 제출하고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방법은 발주처와 별도로 협의한다.
- 과업 착수보고 내용은 과업개요, 추진방향, 투입인력 및 품질·공정 관리계획, 예산내역서, 보안각서 등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고 과업수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과업수행 개요 및 방향
  - 과업수행 투입인력의 구성 및 운영계획, 예산내역서
  - 과업별 세부 수행내용·방법 및 추진일정표
  - 사후관리 계획,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등
- 과업수행자는 다음 공정에 따라 과업수행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형 태	보 고 내 용	비 고
착수보고	- 과업개요, 추진방향, 투입인력 및 품질·공정 관리계획 등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월간보고	- 월간업무 계획 대비 실적 - 문제점 및 진척률 보고 - 차월계획(소요계획, 완료예정일) 및 특이사항	매월 25일
중간보고	- 사업의 중간 단계에서 과업수행 및 예산집행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업무 일정계획 등 보고	발주처와 협의된 일자
최종보고	- 과업 종료 시 최종 산출물 결과보고 - 과업 단계별 산출물 첨부	과업준공 10일 전까지
수시보고	- 주요현안, 의사결정 요망사항, 과업진행 상황에 대하여 감독자 요구 시	수 시

※ 최종보고회에서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할 내용 등이 나타난 경우에는 이를 최종보고서에 즉시 수정 보완하여야 하고, 계약만료일 전까지 수정 및 보완한 결과를 포함하여 재 보고회를 실시할 수 있음(이 경우 세부일자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함)

## 2. 성과품 제출

### 가. 일반사항

-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어·한자 등을 병기할 수 있다.
- 보고서 문장은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다.
- 보고서 규격 및 기타 색도·글자 크기·배치 등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나. 성과품의 제출

-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시기

종류 및 내용	제출기일	부 수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5부
중간보고서	중간보고 3일 전	5부
최종보고서(안)	최종보고일 3일 전	5부
최종보고서	계약만료일 전	15부
전자자료(USB)	“	3EA

- 최종보고서는 부록 등(필요 시)을 포함하여 15부를 제출하며, 과업수행에 활용한 모든 기초자료 및 데이터는 과업성과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파일(한글 및 pdf)을 저장한 전자매체(USB)).
- 최종성과품은 발주처의 사전 검토 및 승인을 얻은 후 제출한다.

## VI

## 보안 대책

- 과업 수행 대표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규칙(국토교통부 훈령 906호)”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따라 자필로 서명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과업 착수보고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과업 참여 인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보안 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 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 수행자는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시에 우리 부에 전량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물량 외 추가 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과업 수행 중 과업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 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서약서를 징구 후 취급도록 하여야 한다.
-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과업의 보안 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자료에 본 과업 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 수행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부 보안 관리책임자 책임하에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 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 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 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 근거, 참여자, 발간일자) 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가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취득한 보안 사항 및 기타 시스템의 내부 구성, 네트워크, 데이터 등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과업 수행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가 본 과업 수행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 및 업체, 전문가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과업 계약 수준의 보안대책을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 첨부 1

# 예정공정표

내용	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가. 세부 연구계획 수립	■							
나. 안전진단 저가 계약 해소 및 안전점검, 진단 전문기관 등록 요건 조정 방안 마련	■	■	■	■	■			
다. 시설 안전 감독관제도 도입 등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마련		■	■	■	■	■		
라. 출렁다리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		■	■	■	■	■		
마. 최종 보고서 작성						■	■	■
보고 및 자문회의	■		■		■	■	■	■

\* 용역 추진 여건에 따라 수행 일정 변경 가능



##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요청기관에 확인하여야 하며, 제안요청기관은 제안요청서 및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에 대해서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본 사업의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됨

##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 및 요약서는 한글(hwp)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PDF로 변환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 제안서 작성은 과업 제안서 편철순서(별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제시된 작성항목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하여야 함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의 구성은 제시된 작성항목의 누락이 없도록 기술하고 제안 요청서에 별지서식으로 제시된 사항은 반드시 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작성방법에 의거 정확하고 명료하게 A4용지 30매 이내로 한글(포인트 15, 줄간격 160%)로 작성하며, 부득이한 경우 A3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단, A3는 A4용지 2매로 적용)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부담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조건부 이행,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첨부할 것을 요구하는 각종 증빙 서류 및 자료는 제안서의 끝에 장을 구분하여 작성
-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할 경우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함

### 3.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접 수 처 : 입찰공고문 참조

다. 접수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라. 제안요청서 문의

- 문 의 :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 연락처 : 044-201-4596

마. 제출서류: 입찰공고문 참조

## 1. 선정방식 및 절차

가.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입찰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를 합산하여 종합순위를 정하고 1순위 업체부터 최종 가격협상을 통하여 용역수행 업체를 선정

나. 선정절차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 종합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2) 기술평가

- 기술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3)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하고, 입찰가격 평가는 기술제안서 평가 후 지정된 장소에서 평가

(4)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가능)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

## IX

## 평가방법 및 기준

## 1. 제안서(기술)평가

## 가.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요소		배점	평가요소	평가방법	비고
1	기관평가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예산규모(정부출연금 포함)</li> <li>○ 참여 연구인력(석, 박사 등) 현황</li> </ul>	계량평가	주1)
2	투입인력평가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 및 경영관리 분야의 제도/정책/기술 관련 연구수행 연수(책임연구원 등)</li> </ul>	계량평가	주2)
3	신용도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징계(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입찰 참가 제한 등 징계를 받은 횟수에 따라 적용)</li> </ul>	계량평가	주3)
4	과업접근방법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수행범위 설정의 적정성</li> <li>○ 연구수행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li> <li>○ 연구내용의 충실성 및 성과물 활용</li> <li>○ 연구성과도출 방향</li> </ul>	비계량평가	주4)
5	과업수행계획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수행체계의 합리성</li> <li>○ 과업추진방법 및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li> </ul>	비계량평가	주4)
6	기타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업에 대한 이해정도 및 제안요청서(지침) 등 수행 필요사항 반영도 종합평가</li> </ul>	비계량평가	주4)
계					

### 주1) 기관평가(계량평가(10))

#### - 기관예산규모(3)

구 분	15억 초과	15억~10억 이상	10억 미만~7억 이상	7억 미만
배 점	3	2.7	2.4	2.1

※ 기관예산규모는 정부출연금을 포함한 2022년도 예산기준

#### - 연구인력 보유현황(7)

구 분	10인 초과	7인 이상	5인 이상	5인 미만
배 점	7	6	5	4

※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분야의 제도·정책기술 관련분야 전공 석사·박사급 참여 연구인력 수

### 주2) 투입인력평가(계량평가(10))

구 분	10년 이상	7년 이상	5년 이상	5년 미만
배 점	10	9	8	7

※ 과업에 참여하는 책임연구원으로 박사 또는 석사 학위취득시기와 관계없이 당해 과업과 관련분야 연구년수

### 주3) 신용도(계량평가(5))

-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징계횟수로 평가(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입찰 참가제한 등 징계를 받은 횟수에 따라 적용)
- 징계회수 : 0회(5), 1회(4.5), 2회(4), 3회 이상(3.5)

### 주4) 과업접근방식 등(비계량평가(75))

- 용역수행정도에 따라 아래 점수비율로 배분하여 합산평가

구 분	배 점	평가정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과업 접근방법	30	30	25	20	15	10
과업 수행계획	30	30	25	20	15	10
기타	15	15	12	9	6	3

※ 유의사항

- 제출된 평가 자료의 내용에 중대한 착오 또는 허위 사실이 있을 때에는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점수계산은 각 평가요소별로 소수 이하 3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한다.
- 계량평가 주1), 주2), 주3)은 공동도급시에는 도급 비율에 따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실적, 경력 등 기간에 대한 산정기준은 이 기준이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공고일로 한다.
- 현재 수행중인 용역의 경력은 평가하지 아니한다(단, 장기계속용역인 경우에는 연차별로 준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한다.)
- 당해 용역사업의 제안요청서의 “평가방법 및 기준” 등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에 의한다.

나. 평가점수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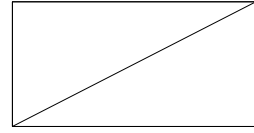
- 점수 : 기술능력평가득점 × 80%

## 제안관련 서식일람

1. 과업제안서
2.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3. 관련 연구분야 인력현황
4. 용역(연구) 수행실적
5. 연구진(책임연구원) 이력사항
6. 보안서약서
7. 청렴서약서



<양식 1>



과 업 제 안 서

용역명: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및 안전진단 역량강화 방안 마련 연구

업체명 : (인)

<양식 2>

##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1. 회사(기관)명		2. 대표자	
3. 용역등록 분야			
4. 주 소			
5. 대표 전화번호			
6. 설립연도	년 월 일		
7. 주요연혁			
8. 예산규모	2022년	2021년	2020년
9. 상시 종업원수			
10. 입찰참가제한 등 징계사항			

<양식 3>

관련연구분야 인력현황

분 야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관련분야)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 본 과업관련 연구인력 현황만 기재할 것.

<양식 4>

용역 (연구) 수행실적

건 명	개 요	수주금액	발주처	계약일	비 고

- 주) 1.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준공한 관련연구 실적을 일자 순으로 기재(학위연구논문 제외)  
 2.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에 주계약자를 기재  
 3.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서의 지분만을 기재  
 4. 계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

<양식 5>

연구진(책임연구원 등)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전공			해당분야 경력		년 월	
본용역 참여임무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 요 경 력							
용역명 (논문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 주) 1. 본 과업관련 경력만 기재할 것.  
 2. 박사 또는 석사 학위취득시기와 관계없이 당해 과업 관련분야 연구경력 기재



## 청렴계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양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



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음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익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과업 제안서 편철 순서

1. 과업제안서 (서식 1 활용)
  - 제안서내용 (A4용지)
2.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서식 2 활용)
3. 관련 연구분야 인력현황 (서식 3 활용)
4. 용역(연구) 수행실적 (서식 4 활용)
5. 연구진(책임연구원) 이력사항 (서식 5 활용)
6. 보안 서약서(서식 6 활용)
7. 청렴 서약서(서식 7 활용)
8. 첨부자료
  - 각종 증빙자료 (실적증명서류 등 관련증빙자료)
  - 기타 제출코자 하는 서류